KOSHA GUIDE

C - 13 - 2012

- (4) 설계도서에서 정한 계측의 결과를 검토하여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조치방 안을 강구하고 이를 지시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를 반입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와의 부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하며, 검수 도중 불량 자재 및 부적격 자재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.
- (6)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안전시설의 설치,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점검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.3 시공자의 의무

- (1) 작업 시작 전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감독 및 감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대처방안을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
- (2)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및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, 시공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- (가) 네일, 연결철근, 지압판, 너트 등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, 성능(강도), 치수, 제작사
 - (나) 천공장비 등 사용장비의 종류, 성능, 운행경로
 - (다) 지반의 변위, 정착력의 변화, 지하수위의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 의 방법 (종류, 위치, 수량, 측정주기, 평가방법 등)
 - (라) 품질시험의 종류, 횟수 및 방법
 - (마) 그라우팅재의 배합설계, 양생기간 및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타설 시기 등
 - (바) 뿜어붙이기 콘크리트(shotcrete)의 강도
 - (사) 기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주요사항
- (3) 작업 시작 전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지휘하여야 한다.
- (4) 설계도서와 시공계획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, 공사 도중 지반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지하수 유출이 지반의 안전 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독 및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.